

우체국B2B 판매교육센터 지침서

On-Line 판매관련 법규



우체국B2B

목 차

◆ On-line 쇼핑 관계법령

- ▷ 권리침해/도용에 관한 법
- ▷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법
- ▷ 판매불가상품
- ▷ 해외구매/수입대행시 주의사항

◆ 품목별관계법령

- ▷ 공산품
- ▷ 식품
- ▷ 의료기기
- ▷ 화장품
- ▷ 교재 · 비디오
- ▷ 음반 · 비디오 · 게임
- ▷ 전기통신자재
- ▷ 상품권

권리침해/도용에 관한 법

❖ 상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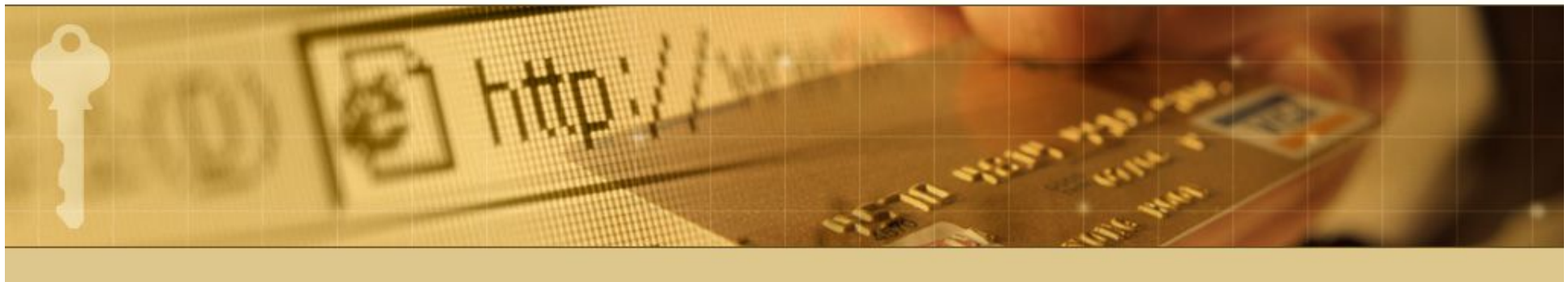
-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 위조품, 일명 짝퉁 상품

❖ 저작권법

- ▷ 권리의 침해죄 :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73조 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ex) 연예인 사진, 다른 판매자가 제작한 이미지 및 상세설명 무단 도용 또는 링크 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인터넷상에서의 유사상표 사용, 타인의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 복사하는 등의 문제로 상품 주체 및 영업 주체의 혼동을 야기시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문제는 부정경쟁행위로 동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 버버리 스타일, 버버리st. , 버버* 전지현스타일 등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법

❖ 식품위생법

- ▷ 허위등의 표시금지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 표기·광고에 관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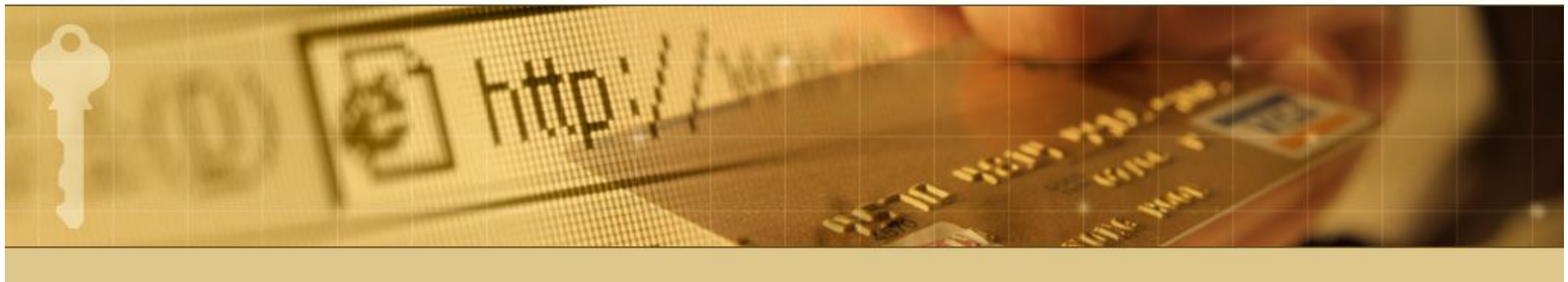
-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On-line 판매불가 상품

- ▷ 술(주세법 제8조), 담배(담배사법), 의약품(약사법)
- ▷ 도수가 있는 렌즈, 안경, 썬글라스, 콘택트렌즈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게임, 음악, 영화, SW)
- ▷ 국내 심의 미필 소프트웨어(게임, 음악, 영화, SW)
- ▷ OEM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부속상품)
- ▷ 성인용품, 성인비디오 등은 성인에게만 판매(만 19세 이상)
- ▷ 양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철도승차권, 항공권(기명),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 입장권 등 포함)

❖ 위 사항 외에도 관련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은 판매하지 마십시오.



해외구매/수입대행시 주의사항

구매대행품목	관계법규	필수확인사항
일반품목	식품위생법 제16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 한글표기사항 표기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 한글표기사항 표기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신고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일반화장품	화장품법 제5조,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 한글표기사항 표기
기능성화장품	화장품법 제 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및 유효성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심사 • 수입신고 • 한글표기사항 표기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14조, 제 16조, 제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 한글표기사항 표기 • 의료기기 수입업신고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공산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 공산품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공산품별 규정된 품질표시를 하여 등록,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분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섬유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금속	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나. 휴대용 예초기의 날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비비탄 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어린이보호 장치, 키펀드



공산품

분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섬유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유아용 및 접착성 섬유제품
화학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합성수지계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기계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토건	물탱크, 미끄럼방지타일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반사안전조끼, 벽지 및 종이장판지,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쇼핑카트, 물안경,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이론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잘흠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식품

❖ 식품위생법

-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과대/과장/허위광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 관할구청 위생과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증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무신고 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 수입식품

- ▷ 수입식품을 판매, 또는 수입대행, 구매하는 경우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 ▷ 수입신고식품 확인 방법
식품 포장용기에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제조년월일, 수입원, 제조원, 판매원 등)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 ▷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로 받지 않은 내용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 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 일반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정 의약과에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

❖ 화장품법

규정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되며,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또한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분할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사례

- ▷ 제품포장에 수입관련사항(제조원/수입원/판매원/lot number)을 국문으로 표기하지 않은 수입화장품
-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제품의 표기사항(미백, 주름개선)을 기재, 이용하여 홍보하는 화장품
- ▷ 용기 또는 제품케이스에 판매금액을 기재 또는 부착하지 않은 화장품
- ▷ 해외 명품 화장품을 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구매대행쇼핑몰 판매자는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



교재/비디오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년 미만의 발행일을 가진 신제품의 서적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10%이상 할인판매가 되지 않으며,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 형태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 등록 상품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용등급을 성인물로 기입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등록 후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명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 성인 등급의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법률 위반
- ▷ 발행 된지 1년 미만의 도서는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음



음반/비디오/게임

❖ 음반 ·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 제작사, 심의번호, 심의등급이 없는 불법 영상/음반/게임기/게임/소프트웨어는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입력시 청소년 보호법 및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기통신자재(유무선전화기)등을 등록하실 때에는 형식승인을 얻은 물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자재

❖ 전기통신 기본법 제 33조

- ▷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써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형식승인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전기통신자재(유무선전화기)등을 등록하실 때에는 형식승인을 얻은 물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위반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 상품권 판매시 유의사항

- ▷ 각종 서비스의 제공사, 발행처,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 양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철도승차권, 항공권(기명),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 입장권 등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